

의안번호	2215298
의 퇴 인	최민희의원
회 답 일	2026. 4. 27.
추계번호	25B706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억 2,400만원(연평균 1억 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회의 참석수당	22	44	44	44	44	197	39
회의 운영 비용	7	13	13	13	13	59	12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60	52	52	52	52	268	54
합 계	88	109	109	109	109	524	105

주: 1.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회의 운영 방식,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기능, 구축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5조의2(이용자 보호)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함.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함(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36조의2(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됨(제3항) 1. 인공지능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인공지능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음.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봄(제6항)	의무규정 재량·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5조의2(이용자 보호)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평가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소요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안 제36조의2(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36조의2에 따른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 참석수당 및 운영 비용,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추계함
 - 분쟁조정 접수·처리, 사실 확인 등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실무 지원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현행 인력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다만,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2026년 회의 개최 횟수: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2회, 조정부 회의 7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회의 참석수당

- (위원회 구성) 유사 사례(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¹⁾)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는 19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조 정부는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 －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의 수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수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유사 위원회(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는 19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조 정부는 민간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유사 사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현황

위원회명	소관 부처	위원 수	연간 회의 개최 횟수 (최근 3년간 평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당연직(공무원)위원: 1명 민간위원: 19명 *조 정부는 분야별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전체회의 4회, 조정부 회의 14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회의 개최 수) 유사 사례(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를 참고하여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는 연 4회, 조 정부 회의는 연 1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 다만, 2026년은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체회의 2회, 조 정부 회의 7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²⁾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9,700만원(연평균 3,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따른 비용추계: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전체회의	민간위원 수(A, 명)	19	19	19	19	19	—	—
	회의개최 횟수(B, 회)	2	4	4	4	4	—	—
	회의참석 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
	소계(D=A×B×C, 백만원)	11	23	23	23	23	103	21
조정부회의	민간위원 수(E, 명)	5	5	5	5	5	—	—
	회의개최 횟수(F, 회)	7	14	14	14	14	—	—
	회의참석 사례금(G,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
	소계(H=E×F×G, 백만원)	11	21	21	21	21	95	19
합 계(D+H, 백만원)		22	44	44	44	44	197	39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운영 시기,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회의 운영 비용

-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비용(회의장 준비, 소모품 구입 등)은 유사 사례(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비용(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을 참고하여 연간 1,300만원으로 추계
 - 다만, 2026년은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회의 운영 비용은 650만원으로 가정
 - 유사사례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운영 비용으로 연간 1,300만원(일반수용비 1,020만원, 사업추진비 270만원) 편성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비용은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100,000원내에서 집행(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6. 1. p.150.)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900만원(연평균 1,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회의 운영 비용	7	13	13	13	13	59	12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비용은 유사 사례(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³⁾)의 구축 및 운영 비용을 참고하여 2026년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6,000만원, 2027년부터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비용으로 연간 5,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시스템은 2026년에 구축 완료하고, 2027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함
 - － 유사사례로, 2023년 구성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분쟁조정 제도 소개 및 분쟁조정 신청처리, 조정사례 제공 등을 위한 시스템(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6,000만원, 2024년부터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연간 5,200만원을 편성함

[표 5]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60	—	—	—	—	—	—
홈페이지 및 시스템 운영	—	52	52	52	52	—	—
합 계	60	52	52	52	52	268	54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기능, 구축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IV. 부대의견

-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수, 회의개최 횟수 및 회의참석 사례금액, 회의 운영 방식,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내용, 구축 및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